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46
2025.9.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이주의 초점

정부, 위기의 대미 수출기업에 13조 6,000억원 추가 수혈

한눈에 보는 관세정책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관세행정 안내

한·ASEAN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제8529.90호)

판례 동향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을 특수관계에 영향받은 가격 또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받은 경우로 본 판례

품목분류동향

품목분류해설

복합구조칩 집적회로(MCP IC)의 품목분류

품목분류 M.A.P.

오르골 분류사례

세번 바로잡기

기타 광물성 제품

상식 밖의 상품학

공짜 술의 정체는 메탄올

법령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정」 제정 외



발 행 인	이종우
편 집 인	남성훈
총 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 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 케 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디 자 인	경성문화사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5년 9월 8일(통권 제2146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04 정부, 위기의 대미 수출기업에 13조 6,000억원 추가 수혈

07 **Weekly News**

관세행정실무해설

11 **한눈에 보는 관세 정책**

17 **관세행정안내**

한·ASEAN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제8529.90호)

25 **질의응답사례**

과세가격

판례동향

28 **관세판례해설**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을 특수관계에 영향받은 가격 또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받은 경우로 본 판례

품목분류동향

40 **품목분류해설**

복합구조칩 집적회로(MCP IC)의 품목분류

49 **품목분류 M.A.P**

오르골 분류사례

52 **세번 바로잡기**

기타 광물성 제품

54 **상식 밖의 상품학**

공짜 술의 정체는 메탄올

최신개정법령

56 **대통령령**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58 **부령**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60 **고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

62 **입법예고**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정부, 위기의 대미 수출기업에 13조 6,000억원 추가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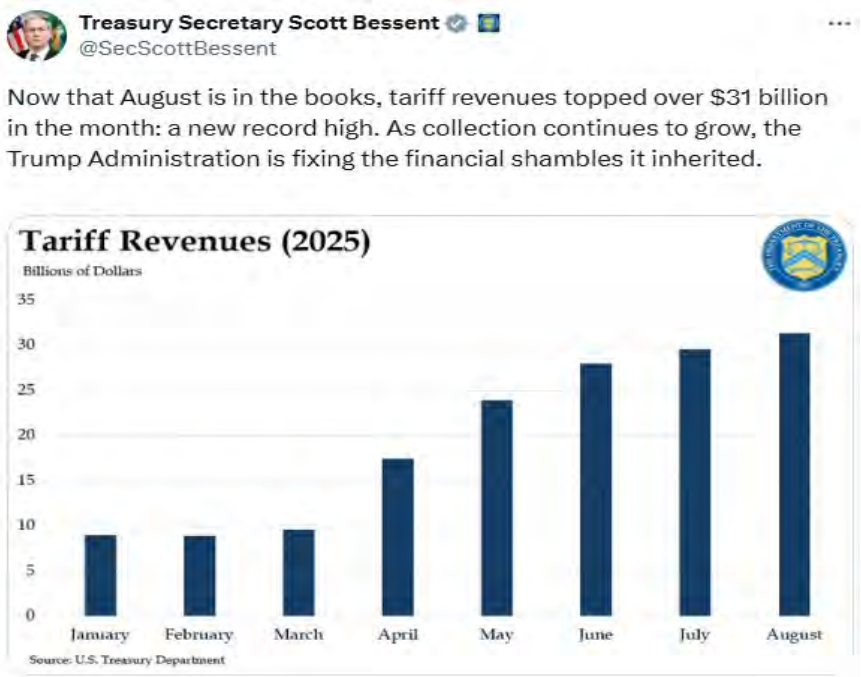
관세 양보 없는 트럼프 행정부, 대미 수출 감소 현실화에 기업 지원 절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A)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강도 통상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대미 수출기업의 경영 악화를 우려한 정부는 수출기업을 위한 13조 6,000억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29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A)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5일 뒤인 9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백악관 기자들에게 "행정부는 지난주 많은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하고, 소송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미국은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 사법부를 압박했다.

같은 날 스콧 버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8월 관세 수입이 3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관세 수입 증가로 트럼프 행정부는 물려받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지지했다.



자료 : 스콧 버센트 미 재무부 장관 소셜 미디어 엑스(X)

미 연방대법원은 오는 9월 29일 상고허가 회의를 통해 이번 2심 판결 상고 심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은 9월 1일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미 2심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 확보에 주력해 고강도 통상조치 추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대미 수출투자 기업은 미국의 '뉴 노멀' 통상정책에 맞춰 생산·제품 전략을 조정하고, 틈새·첨단 품목 중심의 기술·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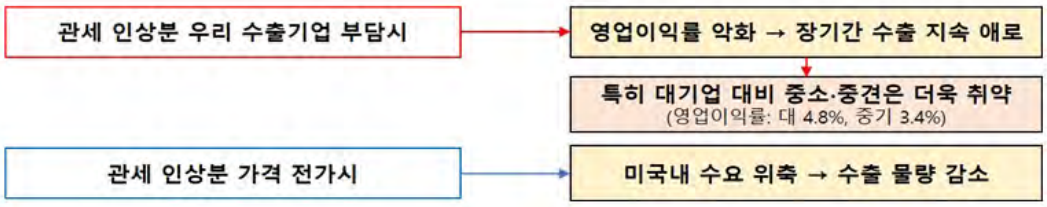
미 상호관세는 우리나라 수출의 하방·직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대미 수출은 미 관세품목 중심으로 소폭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209억달러, 일반기계 88억달러, 철강 2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16%, 16% 감소했다.

정부는 9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과 미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을 통해 정부는 미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영업이익률 감소로 국내기업 경영 여건 악화를 우려했다. 수출기업이 관세를 부담할 경우 수출은 유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가격에 관세를 전가할 경우 수요 위축으로 수출 감소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기재부는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관세 대상 확대로 기계·자동차부품·가전·변압기 등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 관세 부과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는 통상 현안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1조 6,000억원 대비 2조 7,000억원 증가한 4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업의 관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 기업에 연말까지 13조 6,0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도 내년까지 약 4,2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금리를 0.3%p 추가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중소기업 300억원, 중견기업 500억원으로 기존 대비 10배로 늘리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관세 영향이 큰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차보전 사업과 긴급 저리융자 자금을 신설하고,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는 긴급 할당관세를 연내 적용하는 등 더욱 넉넉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기획재정부)

중소기업과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한다.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철강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 기술 R&D를 확대하는 한편,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첨단전략산업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 하구현 기자 |

● 관세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

금융기관	프로그램명	내용	지원규모
한국산업은행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	관세 피해기업 대상 2~3%대 저리 운영자금 제공	3조원
한국수출입은행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기업별 적용금리比 최대 2.0%p 금리인하, 신용등급 하락 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6조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위기극복 특례보증	관세 피해 업종 기업에 보증비율(최대 95%) 및 보증료율(최대 0.5%p) 우대	4조 2,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기준 금리 0.3%p 인하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난 해소 위한 운전자금 지원, 정책자금 기준금리+0.5%p 적용	3,000억원
계			13조 6,000억원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제출,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9월 1일 본격 시행됐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AEO, ACVA)에 참여하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자료는 ① 권리사용료, ② 생산지원, ③ 수수료, ④ 운임·보험료·기타운송 관련 비용, ⑤ 용기·포장비용, ⑥ 사후귀속이익, ⑦ 간접지급금액, ⑧ 특수관계자 거래로 8개 주요 분야다. 다만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올해 상반기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자료 제출 시범운영에서 46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관세청은 일부 기업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기존 신고 내용의 오류를 발견해 스스로 정정했는데, 이는 이번 제도가 기업의 자발적 가격신고 오류 점검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통권 제2139호(7.21.)에 관세청 김용철 심사정책과장의 '관세청 '과세가격 신고 제도' 이렇게 개편됐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고 개편 주요 내용을 다룬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39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한·에콰도르 SECA 공식 서명, 중남미 시장 수출 확산·시장 다변화 본격화

9월 2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에콰도르 우리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은 기존 관세 혜택 중심의 FTA에 환경, 노동, 공급망, 의료 등 다양한 경제협력 요소를 보완한 협정이다. 현재까지 SECA 체결국은 에콰도르가 유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에콰도르 양국은 2016년 협상 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23년 10월에 전체 협상을 타결한 바 있으며, 이번 정식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국회 비준동의 등 잔여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SECA가 발효되면 15년 내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 중인 우리 자동차에 대한 관세(하이브리드차의 경우 35%, 5년)가 철폐돼 주요 경쟁국 대비 유리한 시장접근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중남미 내 한류 확산으로 주목받는 화장품, 라면 등 소비재와 의약품 관세도 철폐돼 관련 수출 확대도 기대되는 한편, 에콰도르 내 온라인 게임, 유통, 영화·음반 등 분야도 개방됨으로써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 소비 및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 하구현 기자 |

"통관비용 줄이고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관세청 종합대책 추진

관세청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9월 1일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

관세청이 발표한 대책은 4개 분야로 통관단계 비용 절감,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부정 유통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이 포함된다. 우선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과세보류 상태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해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 개의 FTA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해 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FTA 체결국에서 선적된 LNG가 비원산지 LNG와 혼합돼 운송되더라도 운송서류와 원산지증명서상 수량에 따라 FTA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가격 안정에도 기여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은 부두(CY)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도 개선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할당관세품목과 수입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관세청장이 지정한 신속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할당관세품목 외에 가격 급등으로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물품도 수입신고 기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속하게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화물 순찰을 강화한다. 반출의무기한이 경과하면 반출명령,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통보로 제재도 강화한다.

농산물 등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는 행위는 우범요소를 심층 분석해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구리스크랩 등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중요 자원은 우범화물 분석 및 적재지 검사를 강화해 밀수출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수입통관 데이터를 분석·공개해 물가안정품목의 수입가격과 수급 현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물가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할당관세품목의 품명,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량 등 통관 현황을 월별로 공개해 물가안정품목의 수입과 유통 상황을 적기에 알 수 있게 한다. | 김성은 기자 |

중국산 열연 후판 제품, 5년간 덤핑방지관세 최고 34.10% 부과 결정

중국산 열연 후판 제품에 5년간 최고 34.10%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작년 9월과 10월, 올해 1월 조사 개시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3건에 대해서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작년 10월 조사를 개시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5년간 27.91~34.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중국의 9개사 수출자가 5년간 수출가격 약속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작년 9월과 10월, 올해 1월에 각각 조사 개시한 지재권 침해 조사 건인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3건 모두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해당 권리를 침해한 물품은 수출과 제조 행위가 중지되고, 반입 배제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작년 12월 조사 개시한 '커넥티드카 특허권(표준특허) 침해' 건은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 쟁점 명확화 등으로 라이선스 협상이 급진전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라이선스 협상을 체결하고 조사 신청 철회를 요청해 조사가 종결됐다. | 하구현 기자 |

올 하반기 관세조사 '공정 성장·민생 안전 보호'에 초점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관세조사 운영을 공정 성장 뒷받침과 민생 안전 보호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먼저 공정 성장을 저해하는 무역거래 행위에 대해 관세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외국산 물품의 저가 물량공세,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이며,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가격 적정성 여부도 들여다 본다.

민생 안전 보호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민 생활용품, 산업안전용품을 수입·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이 한층 강화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내 법령에서 정한 안전성 여부를 인증기관에 확인 받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사회가 공정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대내외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 차단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하구현 기자 |

한·이탈리아 탄소발자국 상호인정 1호 사례 탄생 ··· EU 내 우리 기업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일 국내 기업 G.CLO사의 섬유탈취제 제품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Carbon Footprint Italy(CFI) 양측의 탄소발자국 라벨을 모두 수여했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부터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받은 수출기업은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최근 EU가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과 같이 제품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유럽 국가와의 상호인정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탄소발자국 라벨 동시 수여는 해당 협정이 활용된 첫 번째 사례로 의의가 있다"며, "이탈리아 외에 여타 국가들과도 상호인정협정을 확대·갱신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ICT 수출 지키는 컨트롤타워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 본격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9일 미국의 급변하는 관세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ICT 유관기관, 해외 거점, 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온라인을 통해 상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발생 이슈에 협력 대응하기 위해 구축됐다.

협의체는 ICT 제품·서비스 수출, 디지털 비관세 장벽, AI 서비스 규제 등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제기되는 ICT 분야의 관세와 비관세 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CT 유관 기관은 AI 서비스 규제와 디지털 무역장벽 등 새로운 비관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IT 지원센터는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빠른 시장 적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필요 시 수출기업, 경제·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개최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 속에서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은 ICT 수출을 지키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ICT 수출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하구현 기자 |

한눈에 보는 관세 정책

관세청은 8월 28일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을 공개하며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수출신고 체계 개선부터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인포그래픽으로 소개합니다.

(인포그래픽 : 관세청 제공)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핵심분야 1]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체계 개선

①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② 우편물 목록 수출관리·영세율 적용 지원
③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한 연장
④ 수출목록변환 신고 시스템 기능·이용자 편의 개선

[핵심분야 2]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⑤ 전자상거래 수출 소상공인 과태료 경감
⑥ 이커머스 플랫폼 협력·통관 혜택 발굴
⑦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세번부호 제공

[핵심분야 3]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 확대

⑧ 해외통관 정보제공·통관애로 해소 지원
⑨ 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 활용 지원
⑩ 해외 반품 물품 처리 절차 개선




핵심분야 I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전략
수출 e-로움
관세청
▶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체계 개선
1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현황
한정판 굿즈는 간이수출신고가 안되네? 일반수출신고는 복잡한데…
개선
* (포토 카드 최고가 거래) BTS정국의 "Butterful Night", $3,213(약4450만원), (출) kpopexchage등
기준금액이 상향되어서 굿즈도 편하게 간이수출을 할 수 있어!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400만원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500만원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최고 한도로 상향하여
고가·프리미엄 상품의 수출신고 편의성 제고, 신고 수수료 절감
핵심분야 I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전략
수출 e-로움
관세청
▶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체계 개선
2 우편물 목록 수출관리·영세율 적용 지원
개 선
우정본 목록 자료를 심사하는 전자통관시스템 우편물 목록심사 시스템 구축
전자통관 시스템
우정본-관세청 통관 데이터 연계 ➡ 우편 목록통관 심사, 검사 시스템 운영
우편 목록통관 연계 데이터 항목
23개
우편 목록통관 수출 데이터 건수
약 2백만건
약 6백만건
3배↑
우편 목록통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니!
위험관리·수출검사 선별 등 우편물 수출 관리, 관세행정 지원
특송업체 목록통관과 동일한 '부가세 영세율·수출실적' 수혜 지원
우편물 목록 통관을 통한 수출에 대해 특송업체 목록통관과
동일한 부가세 영세율·수출실적 인정 수혜


핵심분야 I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전략
수출 e-로움
관세청
▶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체계 개선
3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한 연장
현황
가격자를 정리하느라 확정가격 신고일이 지나버렸는데 어쩌지?
확정가격 신고 기한
60일
개선
* 외환대치 불일치 이방
신고기한이 연장되어서 확정가격 신고를 기한 내 할 수 있어요!
확정가격 신고 기한
90일(+30일)
풀필먼트 수출시 확정가격 신고에 필요한 충분한 기한을 제공해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확한 수출대금 신고로 외국환거래 의무 위반 사전 예방
핵심분야 I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전략
수출 e-로움
관세청
▶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체계 개선
4 수출목록변환 신고 시스템 기능·이용자 편의 개선
개 선
주문번호 기반 "수출목록변환 신고 조회·발급 서비스" 제공
조회 서비스
수출신고필증
수출(적재)이행 내역
발급 서비스
수출신고필증
주문번호
01911200433
목록변환수출 적재이행 신고 가능 업체 사전등록 프로세스 전산화
As-Is
이메일 신청·접수 → 시스템 운영팀 요청
To-Be
전자통관시스템 신청·접수·처리
※쇼핑몰 입점 수출자는 주문-통관-배송 전반을 주문 번호로 관리
특송업체 외 우정사업본부도 수출목록변환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추진
사용자 편의, 활용 개선으로 수출목록변환 신고 확대
→ 수출실적 인정, 관세환급, 반품 재수입 면세 및 수출이행 관리 등 용이


핵심분야 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전략
수출 e-로움
관세청
▶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5 전자상거래 수출 소상공인 과태료 경감
개 선
소상공인 과태료 감경기준을 신설(시행령 [별표5]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시스템 개선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50% 경감
50%↓
※ 현재 과태료 부과기준 내 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 경감 기준은 있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경감 기준은 없음
과태료 걱정을 덜어서
전자상거래 수출을
부담없이 할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의 관세행정 관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핵심분야 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전략
수출 e-로움
관세청
▶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6 이커머스 플랫폼 협력·통관 혜택 발굴
개 선
주요 온라인 플랫폼, 풀필먼트社와 협력체계 구축 및
역직구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제공
정보제공
통관제도, 수출입 통계,
국가별 수출 상위 품목에 대한
HSK 정보 등
통관혜택 제공
협력체계를 구축한 플랫폼 기업의
수출건에 대한 서류제출대상 선별제외,
검사 비율 하향 조정 등 혜택 발굴·제공
※ 이커머스 플랫폼이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을 이끄는 중요한 Key Player
판매자
구매자
통관 제도등 여러 정보를 플랫폼 제공, 플랫폼이 대행하는
수출 상품에 대한 통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신속 통관


핵심분야 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전략
수출 e-로움
관세청
▶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7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세번부호 제공
개 선
목록통관 수출시 쉽게 세번부호(HSK)를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 정보 제공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수출 상위 품목 HSK 10단위 추출
→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작성·배포
목록제출 특송업체, 쇼핑몰 사업자 배포 및
전자통관시스템 공지
관세법령정보포털 (세계 HS정보-속견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S 내비게이션-품명검색-
수출입실적순위표) 활용 안내 병행
수출자의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시 세번 신고에 대한 부담 완화,
수출실적 인정 등 세번(HSK) 신고에 따른 혜택 확대


핵심분야 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전략
수출 e-로움
관세청
▶ 해외 통관환경 대응·반품 절차 개선
8 해외통관 정보제공·통관애로 해소 지원
개 선
현지 HS 분류, FTA 활용 등 해외정보 사이트 이용 안내,
해외 통관애로, 현지 통관정보 등 수출 유의정보 제공
수출 초보기업 대상 주요 애로사항, 수출 대상국,
취급 품목 등 파악, 통관 애로 설명회 신청·질의 지원
※ 신규 수출기업에게 국가별 다양한 통관제도, 현지 사정은 사업 위험 요소
(반품·통관보류 등) 및 진입장벽으로 작용
초보기업이지만 사전정보 덕분에
해외통관이 쉬워졌어!!
국내·외 수출 유관포털 활용 및 해외 통관정보 안내,
국가별 수출시장 개척 및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


핵심분야 Ⅲ
수출 e-로움
관세청
▶ 해외 통관환경 대응·반품 절차 개선
9 일본 해상 간이통관 제도 활용 지원
일본은 항공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 제도 운영, 저렴한 해상운송을 통한
對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 필요
개 선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대상, 사전신청 절차, 사전정보 제출, 신고절차 등 정보 제공 및 제도 안내
관세청 상담센터 내 일본 간이통관 제도 안내를 위한 전용 창구를 마련, 관련 제도 활용·문의에 체계적 대응
※ 일본은 해상 소액화물에 대해서 간이통관 제도 시행 예정('25.10.12.), 일본은 전자상거래 최대 수출시장
수출비중 일본(36.0%) 미국(25.8%) 중국(15.1%) ··· 기타(23.1%)
우리 수출업계가 일본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를 적기 활용토록 지원,
운송비 절감, 대일 수출경쟁력 제고, 해상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핵심분야 Ⅲ
수출 e-로움
관세청
▶ 해외 통관환경 대응·반품 절차 개선
10 해외 반품 물품 처리 절차 개선
개 선
P/L 대상확대
여러 반품 물품을 취합하여 재수입할 수 있도록 '란별 금액' 기준으로 적용 대상 확대
As Is 수입신고 금액 150$ 이하
To Be 신고 란별 150$ 이하
* 수입신고 1건당 총 999개란
당사자 등록개선
P/L 신고 적용을 받기 위한 반품거래 당사자의 사전등록 기준 개선
1 신고인·운송인 변경과 관계없이 수입자별 단일 '반품거래등록번호' 발급
2 매년 '반품거래등록번호' 신청·교부 받는 불편 해소, 3년간 사용·연장 가능
3 세관방문 없이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반품거래등록번호' 발급
반품 물품 처리 절차가 수월해서 수출기업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어
등록번호 211-86-92371
※ 현행 반품물품 재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 보완, 원활한 재수입 및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손실 방지
반품 물품 재수입시 절차가 복잡하여 부득이하게 폐기, 헐값 매각했던
물건을 재수입하여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출기업의 손실 방지

한·ASEAN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제8529.90호)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ASEAN FTA
질문	제8529.90호의 제품 생산 시 동일한 소호의 원재료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나요? 제8529.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같은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2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답변	동일한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ASEAN FTA 협정문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8조(불인정공정) 규정에 따라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최종제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게 됩니다.

2. 불인정공정기준 세번변경기준

1) 개요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해야 한다. 실무에서 활용되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과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Criterion, 가공공정기준이라고도 한다)으로 나뉜다.

협정의 원산지규정에는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기준(General Rules)이 존재한다.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해당 품목에 한정해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HS Code별 원산지기준이 List로 제시돼 있어 이를 'List Rules'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산지 결정기준 중 일반기준은 원산지 판정 대상 물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일반기준을 공통기준과 특례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공통기준으로는 완전생산기준, 역내생산원칙(영역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이 있다.

2) 충분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은 물품이 생산될 때 역내에서 충분한 공정을 거쳐 생산돼야 한다는 기준이다. 원산지라는 개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충분한 제조·가공이 수행돼야만 해당 국가가 원산지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 원산지결정의 원칙으로 규정된 것인데, 약간 애매한 표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충분히 가공'이라는 표현인데, 이 '충분히'라는 표현은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정이 수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에서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제품은 부속서 2의 목록(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또는 부속서 2-가(부가규정)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분히 가공'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정이 수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 FTA에서 정한 품목별 기준과 일반기준을 충족한 경우, 즉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을 충족한 경우를 뜻한다.

추가적으로 한·이스라엘 FTA에서는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공정도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즉, 당사국에서 개발된 실질적인 소프트웨어의 설치는 제조공정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는 역내에서 물리적인 제조보다는 그 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설치가 굉장히 중요한 품목들(예 : 제90류의 측정장비 등)에 대한 충분가공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충분가공원칙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협정에서는 충분가공의 반대가 되는 '불인정(불충분한)공정 기준'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공정의 수행 결과라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협정에서는 충분히 가공됐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이다.

많은 협정이 불인정공정기준을 '열거규정' 형식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FTA 불인정공정기준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협정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불인정공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투입 원료	생산공정	생산 제품
소(제0102호)	도축	소고기(제0201호)
의약품(제3003호)	소분 포장 및 라벨 부착	소매의약품(제3004호)
화강암(제2516호)	분쇄	자갈(제2517호)
안경테(제9003호)/안경렌즈(제9001호)	조립	안경(제9004호)

해당 사례들은 모두 투입원료와 생산제품(원산지판정 대상 제품)의 HS Code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만약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이라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번변경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공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수입당사국들의 입장에서 불인정공정기준은 원산지 판정에서 안전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불인정공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협정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한·미, 한·캐나다 FTA가 있다. 미국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일부에서만 불인정공정을 규정하고 있고, 캐나다는 불인정공정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협정들은 대부분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 상품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불인정공정에 대한 사례는 일반적인 원산지 판정 시에도 항상 고려해야 하지만, 특이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적용이나 누적기준 등 특례기준을 적용할 때도 고려돼야 한다.

예를 들어 한·중 FTA에서는 누적기준을 적용할 때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에서 '결합(incorporated)'을 해석할 때 불인정공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도 한다.

3) 세번변경기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으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세번변경기준이란 사용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HS Code)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제조·가공이 이뤄진 것으로 봐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의 분류 체계를 활용한 가공공정기준의 일종으로 제조·가공이 이뤄지면 HS Code가 변경되는 체계를 통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다. 세번변경기준에 의한 원산지 판정 시에는 완제품 및 원재료의 적절한 HS Code 분류가 핵심적인 판정사항이 된다.

그러나 세번변경기준과 같은 형식으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지만, 사실상 세번변경기준이 아닌 모든 원재료가 사용돼도 상관없는 규정도 있다. 예를 들어 한·EU FTA의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는 규정 또한 원산지 결정기준만 본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불인정공정기준이 일반규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면 그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돼지를 역내(미국)에서 도축 후 냉동해 생산된 냉동돼지고기에 대해 불인정공정 여부와 관계없이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에서 관세청은 "한·미 FTA의 경우 협정상 불인정공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품목별 원산지기준(부속서6-가)에 반영돼 있으며, 제01류의 돼지를 역내(미국)에서 도축 후 냉동해 생산된 제02류의 냉동돼지고기는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며, 해당 협정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결국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협정별 불인정공정기준이 있다면 당연히 이를 적용해 불인정공정기준 이상의 공정을 수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질문은 한·ASEAN FTA를 활용할 때 제8529.90호의 제품 생산 시 동일 소호의 원재료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8529.90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 한·ASEAN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 원산지 상품이 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제8529호의 품목분류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524호(평판디스플레이 모듈), 제8525호(송신기기, 카메라), 제8526호(레이더·무선기기), 제8527호(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제8528호(텔레비젼·모니터)의 부분품이 제8529호에 분류된다.

해당 부분품은 제16부 주 제2호의 제16부의 부분품 분류 규정에 따라 ①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을 제외하고, ②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529호 등의 부분품 전용 HS Code에 분류되는 것이다. 즉, 제8529호 분류의 핵심은 ①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물품이 호의 용어에서 규정하는 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다만 한·ASEAN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해석상 제8529호는 HS 2017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HS 2022에 신설된 제8524호[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부분품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ASEAN FTA의 목적상 제8529호의 부분품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될 것이다.

해당 HS Code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①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aerial)와 안테나 반사기(reflector), 전송기(transmission), 수신기(reception), ② 라디오방송이나 텔레비전방송 수신용 안테나의 회전 장치(이것은 주로 안테나를 회전시키기 위하여 안테나 마스트 위에 장착시킨 전동기와 안테나의 방향·위치를 조정해주는 분리된 제어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③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와 캐비닛, ④ 안테나 필터와 분리기(separator) 및 ⑤ 프레임(frame)[섀시(chassis)]이 포함된다.

제8529호에는 여러 가지 부분품이 분류되지만, 해당 부분품을 그대로 납품하거나 수출되는 경우 해당 부분품 자체를 제작할 때도 제8529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수출대상 부분품(제8529호)을 제조하는 데 활용되는 원재료가 동일 호인 제8529호에 분류된다면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미소기준 등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한·ASEAN FTA 제8529.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진행한다.

협정	HS Code	원산지 결정기준
한·ASEAN FTA	제8529.90호	같은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2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한·ASEAN FTA의 경우 협정상 원산지기준을 ① 완전생산물품과 ② 불완전생산물품(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으로 나누고 있고, 불완전생산물품은 일반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RVC) 40%를 두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별표'인 부속서 3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두고 있다. 즉, 모든 HS Code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대부분 물품은 'CTH or RVC 40%'를 통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게 규정한다.

다만, 이번 호의 대상 물품인 제8529.90호는 'CTH or RVC 40%'를 통한 원산지 판정이 불가능하다.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로 규정된 HS Code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8529.90호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선택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활용이 가능한데,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같은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2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Change to Subheading 8529.90 from within this Subheading or any other Subheading)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관세청에서는 "동일한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나, 한·ASEAN FTA 협정문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8조(불인정공정) 규정에 따라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최종제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게 된다"고 추가로 안내하고 있다.

일단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야 '한국산' 충족이 가능한 것은 당연하다. 한·ASEAN FTA에서 '생산'이라 함은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덫사냥, 수렵,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을 말한다.

또한 불인정공정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ASEAN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8조(불인정공정)에서는 "이 부속서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규정한 불인정 공정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결합으로만 수행된 경우, 그 상품은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규정은 운송 혹은 저장 중에 상품을 우수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보존공정, 포장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합 등이 있다.

결국 원산지 결정기준의 해석상 원산지 판정 대상 물품인 제8529.90호의 제조에서 제8529.90호를 포함해 어떤 원재료를 사용해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가능하지만, 부속서 3의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EU FTA의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는 규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제조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8529.90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불인정공정은 ① 포장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합, ② 먼지, 산화물,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단순한 세척,

세정, 제거, ③ 단순한 도장 및 광택 공정, ④ 단순한 절단, ⑤ 표식, 라벨, 로고 및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식별 표지와 같은 것의 첨부 또는 인쇄, ⑥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합 또는 생산품을 부품으로 해체하기, ⑦ 단순한 실험 또는 측정 등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단순한'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이는 기계를 사용하면 무조건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했다고 보거나, 수공업이 무조건 불인정공정기준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즉, '단순한'이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은 개별적인 공정을 확인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른 예로 한·ASEAN FTA의 선별, 분쇄,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물품에 대한 불인정공정기준 해당 여부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비록 협정 규정에 선별, 단순분쇄 및 세척 등의 개별 공정이 불인정공정으로 명시돼 있다고 해도 선별, 라벨제거, 분쇄 등의 전체 공정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해 수행된 경우 단순한 공정으로 볼 수 없다"고 안내했다.

불인정공정기준에 대한 규정은 협정별 해석이 필요하지만 EU-UK TCA Draft Guidance on insufficient production[불충분한(불인정)공정에 대한 지침]에서는 특별한 기술(special skills)에 관해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에서는 영국 원산지 테라코타 화분이 EU에서 손으로 디자인 없이 단색으로 칠해지는 경우 이는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으로서 TCA에서의 누적적용을 통해 EU 원산지 제품이 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다만, 특정 디자인으로 칠하는 것은 단순한 페인팅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므로 불충분한 작업이 아닐 수 있다고 본다. 즉, 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페인팅 공정은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기계(machines), 도구(apparatus), 또는 장비(equipment)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도 필요하다. 실무적으로 불인정공정기준 해당 여부를 가장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기계 등의 사용 여부다. 아주 단순화해 기계를 사용해 공정이 수행됐다면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했다고 '아주 쉽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TCA 지침에서는 이러한 기계 등을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단순한' 작업을 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는 제품을 그대로 얻기 위해, 즉 제품이 그 특성(characteristics)이나 속성(properties)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기계 없이도 유사한 특성이나 속성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 하나의 예시를 제공했는데, 배(Pears) 4개를 한 묶음으로 폼 패킷(foam packets)에 넣고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plastic film)으로 덮는데, 이러한 포장공정이 기계를 통한 자동화 공정으로 수행되는 경우 이를 기계가 사용됐다는 이유로 불인정공정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기계화 공정은 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수작업으로 진행해도 결과물이 다르거나 다른 특성을 갖지는 않는다.

즉, 구체적인 생산 방법이 '불충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생산 과정, 기계의 사용 여부, 그러한 기계 사용이 제품의 특성이나 속성에 미치는 영향,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사례별로 수행돼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ASEAN FTA 목적상 제8529.90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 물품보다 더 쉽게 설정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물품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한·ASEAN FTA 특성을 확인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규정만 충족한다고 모두 원산지 상품이 돼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결국 한·ASEAN FTA 목적상 원산지규정, 특히 불인정공정기준 이상의 공정을 수행했는지 여부 등을 더욱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수입통관 / 과세가격

수출국에서 발생한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 과세가격에 세금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국제운송비, 보험료 등을 합한 우리나라 도착가격[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가격(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품가격은 현지물품구입가격과 현지발생 세금, 운송비 등[본선인도가격(FOB, Free on Board)]을 의미합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에는 우리나라 도착 후 발생한 비용, 국내 운송비, 관부가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하거나 총지급가격에 포함돼 있는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가격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출국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출을 조건으로 환급되는 경우에는 환급사실을 수입신고 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고 총지급가격에서 분리할 수 있다면, 환급된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 냉동 해물 제품의 HS Code

새우살, 홍합살, 오징어, 주꾸미 등이 들어있는 해물 모듬 상품의 HS Code는 어떻게 되나요? 껍질만 손질됐으며, 기타 가공되지 않은 냉동제품입니다.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합물의 구성 재료의 중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문의하신 물품이 만약 제0307호에 분류되는 연체동물(홍합, 오징어, 주꾸미)의 중량이 제0306호에 분류되는 새우의 중량보다 많아 연체동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면 제0307호로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결정 세번	제0307.52-1000호
품명	Frozen octopus(Octopus spp); SEAFOOD MIX; THAILAND
물품 설명	절단한 문어(Octopus aegina) 주성분(35%)에 데친 새우살(25%), 홍합살(20%), 바지락살(20%)을 혼합해 냉동한 것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907 g)
용도	식용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0307.52-1000호에는 '냉동한 문어[옥토퍼스(Octopus)종]가 분류됨.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연체동물의 주요한 종류는 굴·가리비과의 조개·홍합·갑오징어·오징어·문어·달팽이·클램·새조개·피조개 및 전복 등이다. 또한 이 호에는 연체동물의 부분(parts)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물품은 절단한 문어(Octopus aegina) 주성분(35%)에 데친 새우살(25%), 홍합살(20%), 바지락살(20%)을 혼합해 냉동한 것으로, 혼합물의 구성 재료의 중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 따라서 본 물품은 '냉동한 문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0307.52-1000호에 분류함.

수입 / 수입신고

국제우편물로 반입된 물품을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해야 하는데 현장면세통관으로 처리됐습니다. 다시 수입신고할 수 있을까요?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에 따라 "현장면세통관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서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품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예외적 수입신고)
① 수취인이 제27조에 따라 현장면세통관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는 해당 우편물이 현장면세통관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수취인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우편물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취인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화물·보세 / 보관료

일반적인 보세창고와 지정장치장의 보관료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영업용 보세창고의 보관료율은 자율화된 관계로 보세창고마다 서로 다르며, 지정장치장 또한 지정장치장의 특성에 따라 상이합니다. 영업용 보세창고와 지정장치장의 창고료 요율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 보세구역 중 하나인 보세창고(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보세 창고, 「관세법」 제183조에 규정)에서 발생한 창고료(부과기준, 요율 등)는 자율화돼 있는 관계로 특송업체 또는 창고에 따라 상이합니다.
즉, 특허보세창고의 보관료는 보세창고와 화주와의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관세법령에 의해 규제하거나 세관에서 보관료율 및 기준 등을 정해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보세창고에서 보관료를 징수하는 요율은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책정(자율경쟁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인은 보세구역 내 일정한 장소에 보관요율과 보관규칙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타 보관료 책정과 관련한 문의는 해당 보세창고 및 보세창고업자의 협회인 (사)한국관세물류협회(02-701-1455)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2. 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 「관세법」 제169조에 규정)의 경우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는 요율에 대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정장치장에 문의하시거나 관할세관 화물관리부서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을 특수관계에 영향받은 가격 또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받은 경우로 본 판례

민 정 화 | 부산세관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5.18.부터 2018.11.25.까지 특수관계자인 스위스 소재 ○○○ 등 □□□(이하 '이 사건 판매자들')로부터 휴대용 시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제1방법)으로 신고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뒤, 아래와 같은 근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관련해 실제로 지급한 돈(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산출해 관세 등 부과처분을 했다.

2. 원고 주장

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침
- 수입가격 결정 시 적용된 계수는 적정한 비교 대상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결정돼 원고의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높으며, Local Factor를 적용해 수출국 내 소비자가격보다 인상된 국내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인상된 재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적정 거래가격을 산정하지 않음.
- ○○○그룹 및 수출자가 수입국에서의 소비자가격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 방법으로 볼 수 없음.

②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침
- 원고의 수입가격은 본사 정책에 따라 각 수출자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는 무상보증서비스 비용을 감안해 결정됐으나 해당 할인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 계산할 수 없음.
  - 거래가격 결정에 적용하는 계수(Coefficient)에 Warranty Cost를 반영함.
  - 수입하지 않은 시계에 대한 무상보증수리도 부담함.
  - ○○○그룹의 International Warranty 정책은 본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선택권이 없음.

원고는 원고와 이 사건 판매자들이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 특수관계가 이 사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① 이 사건 물품의 이전가격(수입가격)은 해당 산업에서의 정상적인 가격 책정의 관례에서 벗어난 바가 없다. 명품 시계와 같이 희소성이 있는 물품은 판매자가 제시하는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이 사건 물품의 이전가격은 수입자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바가 없다. ③ 이 사건 물품의 우리나라 소비자판매가격은 ○○○그룹이나 이 사건 판매자들이 아니라 원고가 직접 결정한다. 국내 소비자가격 결정요소인 'Local Factor'라는 것은 스위스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발생하는 비용, 세금 등의 경우 원고가 소비자판매가격에 반영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출국 소비자판매가격과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값으로, '가상의 환율'과 함께 원고가 국내 소비자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참고할 가격을 계산하면서 사용하는 보정계수일 뿐 이 사건 물품의 이전가격과는 관련이 없다. ④ 이 사건 물품의 이전가격에 있어 이 사건 판매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이윤을 원고를 위해 포기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매출총이익률'은 회계상의 지표에 불과하고, 원고의 그것이 동종업계를 기준으로 높은 편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업체가 작성한 매출총이익률 관련 회신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이를 이전가격과 관련해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자보증 비용의 부담은 국제거래에서 판매자와 수입자가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원고의 무상수리 서비스는 판매전략이나 마케팅의 일환이고, 이 서비스는 관련 비용이 크지 않으며, 그로 인한 하자보증 비용은 원고의 마케팅 활동 비용으로서 소비자가격에 전가돼 있다. 즉 원고는 자기의 계산으로 무상수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고, 원고가 위 서비스에 따라 이 사건 판매자들로부터 할인을 받거나 ○○○그룹으로부터 비용보전을 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로 인한 비용이 수입 거래 혹은 그 거래가격과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과격과는 관련이 없어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3. 관련 법령

가. 「관세법」

■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 <후략>

■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중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중략> …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 <중략> …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나. 구 「관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중략> …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4. 판결요지[1)]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판매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입가격을 그대로 수용했을 뿐이라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원고와 이 사건 판매자들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판매자들을 대신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를 수행하면서 부담한 비용은 구「관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할인금액 내지 하자보증비로서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고, 이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상에는 결국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를 수긍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해 사건을 종결했다.

가. 특수관계에 의한 가격 영향

1) 이 사건 판매자들을 비롯한 ○○○그룹 내 시계 브랜드 회사들이 이전가격을 책정하는 방법 및 과정 등을 정한 '이전가격정책[TP(Transfer Pricing) Policy]'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이전가격)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스위스 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출국 소비자판매가격에 '계수(coefficient)'를 곱해 결정된다.

2) 기타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수입자인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스위스 소비자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 사건 물품의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산식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 책정에 있어 원고가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이자 수입자인 원고의 이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계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 결정을 위한 '계수'를 정함에 있어 그 결정에 관여했다거나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판매자들에 대해 가격협상을 요구했다는 등 수입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계수의 결정에 있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1) 2024.1.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0980호 판결, 2024.6.27. 선고 대법원 2024두36067호로 확정

주는 자료가 없고, 원고는 그와 같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개별 기업 보고서에는, 최종 고객에 대한 최종 가격 범위가 ○○○그룹 브랜드 회사들에 의해 결정되고 현지 관계사는 특정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소액 할인과 관련해 약간의 유연성이 있을 뿐 ○○○그룹 브랜드 회사들이 전달하는 가격 책정 방침을 준수하며 가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룹 브랜드 회사들의 명시적 승인을 받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 점, 피고가 반복해 "원고에 계수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당시 원고로부터 '계수는 수출자의 경험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산정자료는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판매자들과 수입거래를 시작한 이래 변경된 적이 없다'는 설명만을 들었다"라고 주장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나아가 명품시계 시장의 특수성을 들어 가격협상을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거나, 당초 이 사건 판매자들이 계수를 설정할 당시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내역이 어떠했는지 원고로서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 결정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가격결정 내지 그 기초가 되는 요소의 결정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수입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단지 이 사건 판매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입가격을 그대로 수용했을 뿐이라고 보인다.

3) 한편으로 ○○○그룹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르면, 이전가격 산식의 '계수'는 수입국의 통상적인 시장상황이나 환율 등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돼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가격결정 방법상 수입국의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요소도 '계수'가 유일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입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수'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기 시작한 2001년 무렵 이래 각 브랜드별로 변동이 없었는데, 환율 요인을 제외한다면 결국 수입가격이 장기간 고정돼 있었다고 봐야 하고, 결과적으로 ○○○그룹에서 같은 등급으로 분류한 브랜드들의 매출총이익률도 연도별로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수입가격 책정에 중요한 요소로서 '이전가격정책'상으로도 계수의 결정에 반영하도록 한 국내시장 상황, 환율 및 관세율 등의 변동과 무관하게 이 사건 판매자들 내지 ○○○그룹의 결정에 따라 계수가 장기간 변경 없이 고정돼 왔다면,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 결정뿐만 아니라 그 변경도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최종 고객에 대한 최종 가격 범위가 ○○○그룹 브랜드 회사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취지의 개별기업보고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물품의 국내 소비자판매가격 역시 ○○○그룹이나 이 사건 판매자들이 사실상 결정해 온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나.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조건·사정에 의한 가격 영향 부분

원고가 이 사건 판매자들로부터 수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해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할 경우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의 유상수리나 보증기간 내의 소비자과실 등으로

인한 유상수리와 함께 보증기간 내의 무상수리까지 구매자인 원고가 실제로 수행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을 수행해야 할 주체는 이 사건 판매자들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판매자들을 대신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보증기간 내의 무상수리를 수행하면서 부담한 비용은 구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할인금액 내지 하자보증비로서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고, 이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이 사건 판매자들과 개별적인 계약서 작성 없이, 구매주문서, 확인서, 송장, 납부서로 거래해 왔는데,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의 주체를 직접 명시한 계약서 등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그런데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 및 보증과 관련한 내부 문건들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해 하자보증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주체를 이 사건 판매자들로 정하고 있고, 최종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브랜드 보증서를 통해 하자보증의 주체가 이 사건 판매자들임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판매자들이 보증조건 및 내역, 보증기간 등 하자보증 관련 정책을 모두 결정하고 있고, 원고가 그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거나, 그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그룹의 정책에 따른 보증기간 내의 무상수리는 상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해야 하는 하자보증으로서 이를 수행해야 하는 주체는 이 사건 판매자들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와 이 사건 판매자들 사이에 하자보증의 책임을 부담할 주체를 구매자인 원고로 정하거나, 원고의 계산으로 하자보증을 수행하기로 하는 특약이 이뤄졌다고 볼 증거도 없다.

5. 검토 의견

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이전가격) 결정방법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출국 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출국 소비자판매가격에 '계수(coefficient)'를 곱해 결정된다.

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 받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원고(구매자)와 이 사건 판매자들이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관련 법리상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실제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에 의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제4호 규정의 취지 및 내용,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점, WTO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2항 (a)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303 판결).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각호는 위 「관세법」 규정의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를, 제2호에서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를 들고 있다[2]. 현행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37호, 2025.7.1. 일부개정) 제28조에서는 판매주변 상황 검토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에 대해,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해당 가격이 결정된 방법 등 거래와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 특수관계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2) WTO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2항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경우에는 거래상황을 검토해 그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수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Ⅰ. 주해는, "세관당국이 추가적인 조사없이는 해당 거래가격을 수락할 수 없을 때에는 거래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하여야 하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 거래의 모든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거래상황에 의한 검토방법으로 3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첫째와 둘째가 국내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 2호에 도입된 것이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판매 주변상황 검토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 제2항 제1호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또는 제2호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가격차이가 있을 때에는 해당 호 단서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1.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4.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5.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6.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의 가격이 제조자 등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7.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8.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다만, 동등한 수준의 거래조건과 시장조건에서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며, 구매자의 총이익률은 해당 산업의 총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10.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특정한 공식을 사용**하며,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해당 공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스위스 소비자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 책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이자 수입자인 원고의 이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계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가 '계수'를 정하는데 그 결정에 관여했다거나 이 사건 판매자들에게 가격협상을 요구했다는 등 계수의 결정에 있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판매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입가격을 그대로 수용했을 뿐으로 보이고, 이 사건 판매자들이 국내 소비자가격까지 결정하는 것은 독립된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형태라 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라 판단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기 시작한 이래로 '계수'의 변동이 없었던 점(국내시장 상황, 환율 및 관세율 등의 변동과 무관하게 계수가 장기간 변경이 없이 고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면,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계수'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도 법원이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① 본사 '이전가격정책'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의 이전가격 결정방식이 수입자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전 세계의 제3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 주장처럼 '국내 소비자가격에서 계수를 곱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가격결정 방식 자체는, 제품이 제3자에게 판매되는지 그룹 관계회사들에게 판매되는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위 산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계수'는 구매자(purchaser)별로 다르며 해당 수입국의 상황(시장 경쟁 상황, 환율 등)이나 수입자가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 등을 고려해 결정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①과 같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또한 ②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 결정 내지 거래 과정이 해당 산업에서의 정상적인 가격 책정의 관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수출자가 수입자와의 가격협상 없이 정한 계수를 적용해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수입국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한 계수를 장기간 고정한다거나, 수출자가 수입국의 소비자가격까지 실질적으로 통제·결정하는 것이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해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할 경우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의 유상수리나 보증기간 내의 소비자과실 등으로 인한 유상수리와 함께 보증기간 내의 무상수리까지 구매자인 원고가 실제로 수행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자보증에 대한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는 대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

에 포함되나[구 「관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 제2호, 대법원 1993.12.7. 선고 93누17881 판결의 취지 참조],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정비,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명백히 구분되는 것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하자보증'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해 그 물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상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자보증비는 그것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유지'의 개념에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그 내구연한 동안 해당 수입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수시로 이뤄지는 수리가 포함된다[3]. 하자보증(warranty)은 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유지(maintenance)는 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물품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한 형태다(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20.1). 한편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해 하자보증의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보증비는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한 활동의 대가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20.1**

하자보증비

하자보증은 자동차와 전기기기와 같은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보증서 지참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자 교정(부품 및 인건비) 또는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하자보증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하자보증은 물품에 내재된 숨겨진 하자, 즉 있어서는 안 되며 물품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판매자가 수행하는 하자보증

6. 하자보증이 물품의 단위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협정에 따른 하자보증비의 처리에 있어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는다. 판매자가 고객에게 하자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자는 물품의 가격을 책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할 것이다. 하자보증에 기인한 어떤 추가 비용도 가격의 일부가 되고, 판매조건으로서 지급된다. 이 경우에는, 협정은 어떤 공제도 허용하지 않으며, 하자보증의 비용은 비록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구분된다 하더라도 거래가격의 일부이다.
7.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보증(의 구매)을 부과하는 경우, 판매자는 물품과 별도로 하자보증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하자보증비는 말할 것도 없이 여전히 수출하기 위한 판매조건이고,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즉, 총 지급의 일부로 고려된다.
8. 만약 판매자가 하자보증 위험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이는 거래가 분할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판매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제3자가 수행한 어떠한 하자보증 위험도 판매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그래서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구매자가 지

3)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두11305판결 참조

> 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으로 제1조에 대한 주해에서 정의하고 있다.
> 이러한 정의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행하였거나 행할 모든 지급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부속서 III의 제7항에 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자와 하자보증 이행을 약정한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한 경우, 해당 지급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매자와 특수관계인 다른 당사자가 하자보증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다.
>
> **구매자가 수행한 하자보증**
> 9. 제5항(b)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하자보증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자보증에 대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지급액 또는 기타 비용은 하자보증이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제1조에 대한 주해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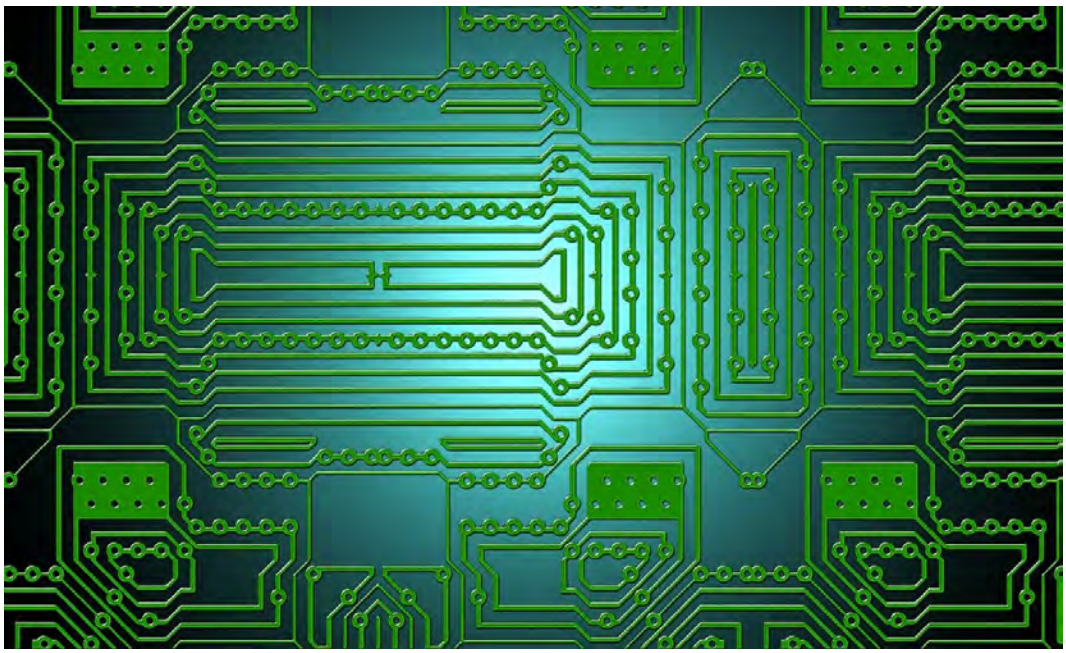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원고의 무상수리 서비스는 판매전략이나 마케팅의 일환으로, 관련 비용이 크지도 않으며, 그로 인한 하자보증 비용은 원고의 마케팅 활동 비용으로 소비자가격에 전가돼 있다고 주장했다. 즉 원고는 자기의 계산으로 무상수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고, 원고가 이 서비스에 따라 이 사건 판매자들로부터 할인을 받거나 ○○○그룹으로부터 비용보전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은 관련 증거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을 수행해야 할 주체는 결국 이 사건 판매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판매자들을 대신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보증기간 내의 무상수리를 수행하면서 부담한 비용은 구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할인금액 내지 하자보증비로서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고 이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상에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복합구조칩 집적회로(MCP IC)의 품목분류
- WCO HS위원회 결정 -

김 진 용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

Ⅰ. 개요



※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는 트랜지스터, 저항, 커패시터 등과 같은 전자부품들을 하나의 작은 반도체 칩에 집적한 전자회로를 의미하며, 다양한 전자기기 내부에 장착돼 있다.

현재 HS 제8542호에는 집적회로가 분류되며, HS 협약상 집적회로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노리식 집적회로(Monolithic IC), 하이브리드 집적회로(Hybrid IC), 복합구조칩 집적회로(MCP IC),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s)가 그것이다.

최근 전기자동차 또는 전력기기 등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일반적인 구조의 집적회로가 아닌 특이한 구조의 집적회로가 등장하고 있다.

'트릴리스 집적회로(Trilith IC)'[1] 라는 특이한 명칭의 전자집적회로가 현재 수출입 거래되고 있는데, 검토의견에 따라 HS 주 규정상 집적회로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WCO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집적회로에 대해 HS 제85류 주 규정에 부합하는 집적회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 HS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한 바 있다.

더구나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제품에 대한 고율의 품목관세 부과 예정과 관련해, WCO 결정이 없었다면 트릴리스 집적회로가 HS 협약상 제8542호의 집적회로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나, WCO에서 트릴리스 집적회로의 품목분류를 기결정해 집적회로 해당 여부를 미리 확정해 놓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추가로 유사한 품목분류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듀얼다이 홀센서 집적회로(Dual Die Hall Sensor IC)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이번 호에서는 전자집적회로, 특히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품목분류에 대한 HS위원회 결정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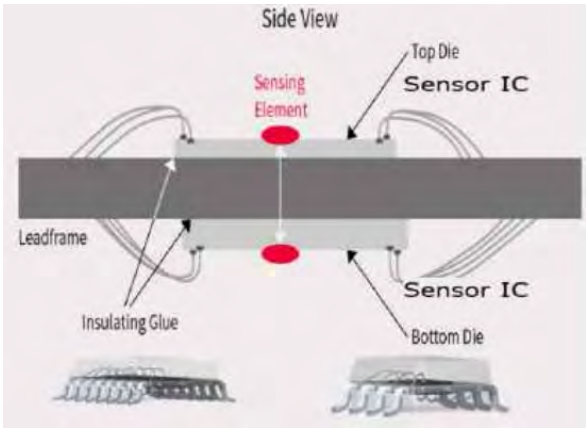
Ⅱ. 쟁점 사례

1. ①번 물품 : 트릴리스 집적회로(Trilith IC)

물품 설명	ㅇ 하나의 패키지 내부에 세 개의 다이(die)에 집적된 네 개의 스위치를 연결함. 브릿지 구조 안에서 직류 모터를 구동하도록 맞춰져 있으나 단일 독립 스위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 ㅇ 네 개의 스위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이고 반도체 기술로 제작됐으나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음.
물품 이미지	 A. 본드 와이어 : 금속 와이어는 IC와 I/O 핀 사이의 상호연결을 제공 B. IC : 반도체 소재로 만든 집적회로 C. 리드프레임 : 반도체 다이용 시스템 캐리어 D. 핀 : IC와 발신에 대한 전기신호의 입력 및 출력

1) 인○○○社에서 제조하는 모터 드라이버 IC 제품군을 지칭하는 용어로, 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제품군을 나타낸 용어다(출처 : 구글 AI 답변)

2. ②번 물품 : 듀얼다이 홀 센서 집적회로(Dual Die Hall Sensor IC)

물품 설명	ㅇ 정밀 각도와 위치 감지를 위해 고안됨. 하나의 패키지에 두 개의 중복 센서로 구성돼 있음. ㅇ 두 개의 감지 요소는 모놀리식 집적회로이며 반도체 기술로 제조됐지만,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지는 않음. ㅇ 모든 구성요소는 다이가 제조될 때 동시에 제조됐으며, 다른 능동 또는 수동 회로 소자는 장치에 조립되지 않음.
물품 이미지	

3. 쟁점 세번 : 제8541호(반도체 디바이스)
제8542호(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제8543호(기타의 전기기기)

4. 의견

가. 제8541호

제8541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가 분류되고,

제8541호 해설서에서 "(Ⅱ) 트랜지스터(transistor) : 전류를 증폭·발진·주파수 변환·스윗칭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3단자 소자와 4단자 소자이다. 트랜지스터(transistor)는 제3의 단자에 전계(電界 : electric field)를 가하여 다른 두 개의 단자간의 저항을 변화시켜 이에 의하여 작동한다. 부가된 제어신호나 자계(磁界)는 저항의 변화에 의하여 생기는 작동보다 약하므로 증폭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쟁점 ①과 ② 물품은 모두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작용에 따라 작동하는 물품으로서 제8541호의 반도체 다바이스에 해당하며,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반도체 디바이스가 분류되는 제8541.59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나. 제8542호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됨.

제85류 주 제12호에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대해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된 (interconnected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interconnected'의 해석 관련, 쟁점물품들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들은 전기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으나 쟁점물품의 내부에 모노리식 집적회로들이 물리적(기계적)으로 연결, 구성돼 있으므로 'interconnected'의 개념에 부합함.

제8542호 해설서에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두 개나 그 이상의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를 나란히 적재한 것 ;
- 두 개나 그 이상의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를 위 아래로 적층한 것 ;
- 세 개나 그 이상의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의 두 가지 형태를 결합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①번 물품은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리드프레임 위에 나란히 적재한 것이고, ②번 물품은 리드프레임의 위 또는 아래로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배치한 것으로서 각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 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돼 있지는 않지만 'interconnected'가 항상 전기적 연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개념에 부합함.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복합구조칩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제8542.39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다. 제8543호

제8542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제85류 주 제12호에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대해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된 (interconnected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interconnected'의 해석 관련, 국문보다는 영문이 우선되며,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는 신호처리를 위해 통상적으로 모노리식 집적회로들이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돼 각종 기능(예 : 입출력, 증폭, 감쇠, 프로세싱 등)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물품임.

①번 물품은 별개의 스위칭 기능을 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 4개가 단순히 하나의 패키징 내부에 물리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 볼 수 없고, ②번 물품도 별개의 감지 및 감지신호 처리 기능을 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 2개가 단순히 하나의 패키징 내부에 물리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 볼 수 없음.

제8542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조립품도 제외한다. … <중략> … (b) 초소형 전자회로 위에 다이오드(diode)·변환기·저항기 등 하나나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 ; (c) 개별부품들(discrete components)의 결합물,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나 복합부품 집적회로 이외의 초소형 전자회로의 결합물"을 제8542호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따라서 쟁점물품들은 제85류 주 제12호의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류의 잔여호인 제8543.70호에 분류됨.

라. 논의 결과

WCO에서 논의한 결과, 'interconnected'의 개념을 모노리식 집적회로 간에 전기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물리적(기계적) 연결이 돼 있어도 'interconnected'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봤고,

물리적(기계적)으로 모노리식 집적회로가 배치된 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해 'interconnected'의 개념을 부합하므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해당해 쟁점물품들은 제8542호로 결정됐다. 해당 결정은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2(HS 품목분류의견서)로 국내수용됐다.

8542.39 5. 집적회로(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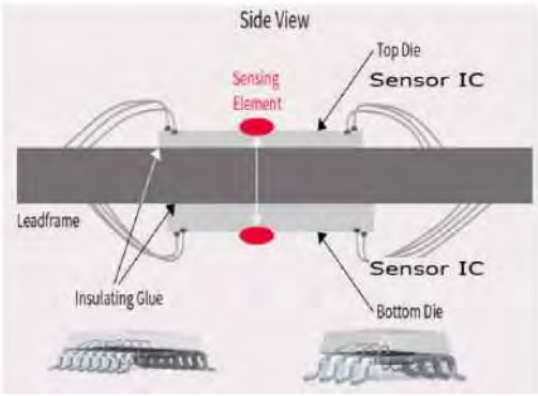
3개의 다이(die)에 통합된 4개의 스위치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집적회로(IC).
4개의 스위치는 모두 모놀리식 집적회로이며 반도체 기술로 제조되지만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지는 않음.
다른 능동 또는 수동 회로 소자는 장치에 조립되지 않음.
스위치는 전기모터를 구동하도록 맞춰져 있지만 단일 독립 스위치로도 사용할 수 있음.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류 주 제12호 나목 제3항) 및 제6호 적용



A. 본드 와이어 : 금속 와이어는 IC와 I/O 핀 사이의 상호연결을 제공
B. IC : 반도체 소재로 만든 집적회로
C. 리드프레임 : 반도체 다이용 시스템 캐리어
D. 핀 : IC와 발신에 대한 전기신호의 입력 및 출력

8542.39 6. 듀얼 다이 홀 센서 집적회로(IC)

듀얼 다이 홀 센서 집적회로(IC)는 하나의 패키지에 두 개의 중복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감지 요소(개별 부품 아님)가 동일한 측면 위치에 배치되어 있음.
두 센서는 모놀리식 집적회로이며 반도체 기술로 제조되었지만, 전기적으로 상호연결되지는 않음.
모든 구성요소는 다이가 제조될 때 동시에 제조되었으며, 다른 능동 또는 수동 회로 소자는 장치에 조립되지 않음.
각도 및 위치 감지를 위해 설계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류 주 제12호 나목 제3항) 및 제6호 적용



Ⅲ. 사례 해설

지금까지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제품에 대한 WCO의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수출입 화주,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가 수출입 통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집적회로 관련 품목분류 결정의 세부사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번 WCO의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정의상 'interconnected'의 개념과 세부 분류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관세율표 제8542호 해설서에서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와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의 구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8541호의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과 같은 개별 반도체 디바이스는 단일의 능동 전기기능을 가지고 있고, 반면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는 말 그대로 능수동 전자소자의 회로가 집적돼 있어 여러 가지 전기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제8542호 해설서**
전자집적회로와 달리 **개별 부품은 단일의 능동(能動) 전기기능**(제85류의 주 제12호 가목에서 정의된 반도체 디바이스)이나 **단일의 수동(受動) 전기기능**(저항·축전기·인덕턴스 등)을 갖출 수 있다. 개별부품(discrete component)은 분리가 불가능하며 시스템의 기본적인 전자구성 부품이다.

그러나 **집적회로와 같이 몇 개의 전기회로 요소로 구성되어** 여러 가지의 전기기능을 가지는 부품은 개별부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전자집적회로는 수동(受動 : passive)소자나 수동(受動)부품과 능동(能動 : active)소자나 능동(能動)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한 장치이며, 단일의 유닛(unit)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전자집적회로 중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는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85류 주 제12호**
3)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 한 개 이상의 절연기판과 리드프레임(lead frame)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다른 능동 회로소자나 수동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된"의 영문 표현이 "consisting of two or more interconnected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이며, 문제는 'interconnected'의 해석과 관련된다.

쟁점물품과 비교해 보면, ①번 물품은 하나의 패키지 안의 다이(die) 세 개에 연결된 네 개의 스위치가 통합돼 있다. 네 개의 스위치는 통합 회로이고 반도체 기술로 제작됐으나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이유는 예컨대 하나의 모노리식 집적회로가 파손될 경우 안전을 위해 다른 집적회로와 전기적 연결이 되지 않아 다른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쟁점물품 ①과 같은 물품을 "트릴리스 집적회로"라고 업체에서는 명명해 거래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안전을 위해 4개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하지 않았다. 이 경우 제85류 주 제12호의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정의(특히, interconnceted)를 만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interconnected'를 모노리식 집적회로 간 연결 방식을 전기적 연결로만 본다면, 쟁점물품 ①은 제8542호의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연결방식을 전기적 연결방식으로 한정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모노리식 집적회로가 배치만 돼 있어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쟁점물품 ①은 제8542호의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해당하게 된다.

쟁점물품이 제8542호의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검토해 보면, HS 해설서상 다른 집적회로의 정의상 특히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는 제85류 주 제12호의 하이브리드 집적회로의 정의다.

> ■ **제85류 주 제12호**
>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박막(薄膜)기술이나 후막(厚膜)기술로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와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 도자제 등)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상호접속자나 상호접속용 케이블로 결합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 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상기 하이브리드 집적회로의 정의에서 능수동소자를 상호접속자나 상호접속용 케이블로 결합한 회로라고 정의해, 전기적 연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거의 모든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내부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전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또한, WCO 회의 참석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집적회로를 정의하면서 "회로소자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주장했다.

반면, 회로소자 간 전기적 연결이 되지 않아도 집적회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검토해 보면, 제85류 주 제12호의 'interconnnected'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개념을 넓게 본다면 트릴리스 집적회로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집적회로도 제8542호의 집적회로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interconnected'의 개념을 넓게 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쟁점물품은 반도체 기술로 생성됐고, 제8542호 해설서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거의 분리불가능하게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쇄배선 혹은 기타 캐리어(carrier)에 장착됐기 때문에 쟁점물품은 제8542호에 분류된다는 의견이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결과, WCO에서는 쟁점물품을 결과적으로 제8542호의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분류를 결정했다고 생각된다. 즉, WCO에서는 표결을 거쳐 'interconnected'의 개념을 넓게 봐 전기적 연결방식을 필수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안으로 쟁점물품의 연결방식은 전기적 연결방식이 아니므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대신 HS 협약 개정을 통해 제8542호에 별도의 집적회로 규정을 만들어 집적회로로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삼는 일반적인 메모리 IC 등은 내부 집적회로 간 전기적 연결이 돼 있어 이러한 쟁점이 발생되지 않지만, 주로 전력 반도체, 센서 등 분야에서는 전기적 연결이 되지 않는 전자집적회로가 등장해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통관 시 주목해야 할 사례로 보인다.

물품 ②번인 '듀얼다이 홀 센서 집적회로(Dual Die Hall Sensor IC)'의 품목분류 논리는 물품 ①과 같으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WCO에서 논의됐던 세번인 제8541호 분류와 관련해, 집적회로 없이 단일의 능동기능만 가진 물품만 제8541호에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은 모두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돼 있어 두 물품은 제85류 주 규정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정의에서 벗어나고 따라서 제8541호에서 제외돼야 하는 것으로 대부분 국가가 동의했고, 이는 HS 규정상 타당하다.

Ⅳ. 시사점

지금까지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WCO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살펴봤다. 이를 통해 'interconnected'의 개념과 제8541호와 제8542호의 세부 분류논리를 정리할 수 있었다.

WCO의 이번 쟁점물품은 현재 AI, 자율주행 등의 기술 발전에 따라 전력반도체, 센서 등 분야에서 앞으로 유사 물품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되며, 반도체 관련 업계에서는 주목해야 할 사례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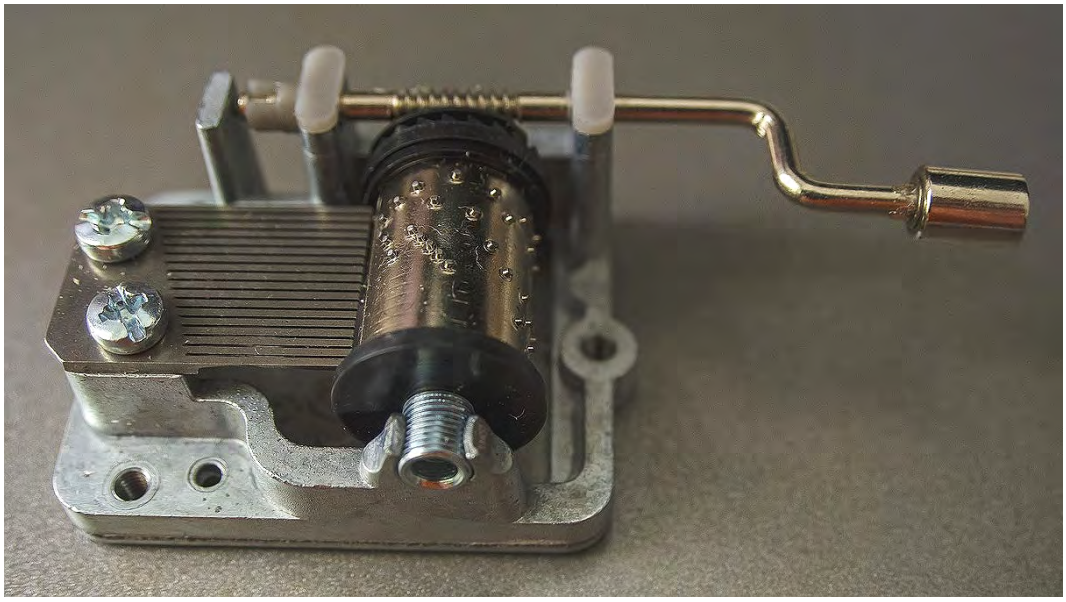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 언급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참고해 무역업체, 신고인, 관세청 등에서는 유사한 제품의 전기적 연결 여부, 회로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출입신고 시 적정한 세번으로 분류하기를 희망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오르골 분류사례
- 2018년도 1월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 -

김 홍 관 | 부산세관 분석실

1. 물품 소개



※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태엽을 감으면 맑고 아련한 선율이 흐르는 오르골은 오랜 세월 사랑받아 온 악기다. 오르골이란 이름은 영어가 아닌 일본에서 유래한 것인데, 네덜란드어 '오르겔(Orgel)'이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식 발음으로 굳어졌다. 영어권에서는 '뮤직박스(Music Box)'라 부르며, 한자어로는 '자명악(自鳴樂)' 또는 '자명금(自鳴琴)'이라 한다.

오르골의 근원은 중세 교회 시계탑에 있다. 시간을 알리던 종소리를 자동으로 멜로디로 바꾸려는 시도 끝에, 1381년 브뤼셀에서 니콜라스 시계탑이 제작됐다. 이 시계탑의 자동연주 장치는 '카리용'이라 불렸으며, 이후 소형화를 위한 기술 발전이 이어졌다. 18세기 말, 스위스 제네바의 시계 장인 안투안 파브르가 태엽 장치를 도입한 최초의 오르골을 완성했다.

19세기 오르골은 유럽 전역은 물론 중국까지 유행하며 스위스의 주요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에디슨의 축음기 발명, 1차 세계대전, 경제 대공황 등을 거치며 위기를 맞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주둔 미군 사이에서 다시 인기를 얻으며 산업은 재도약했다.

오르골은 실린더식, 디스크식, 천공리더식이 대표적이다. 실린더식은 금관 원통에 핀을 심어 태엽을 감으면 원통이 돌며 금속판을 튕겨 소리를 낸다. 금속판 개수에 따라 음역이 다르고 음역이 넓을수록 가격이 높다. 디스크식은 원반형 금속판을 교체해 다양한 곡을 연주할 수 있으며, 천공리더식은 구멍이 뚫린 종이 악보로 음과 박자를 표현해 곡 길이에 제한이 없다.

1950년대부터 일본에서 소형 오르골이 대량 생산되며 산업 중심이 스위스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 현재는 전 세계의 오르골 애호가들에 의해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오르골의 가장 큰 매력은 복잡한 기계 구조에서 나오는 독특한 음색과 감성이다. 단순히 음악을 재생하는 기계를 넘어 각 곡마다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전통 음악 요소를 현대까지 전한다. 현대 음악가들은 오르골 소리를 샘플링하거나 영감을 받아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고, 팝·일렉트로닉·힙합 등 다양한 장르에 접목한다. 영화음악에서도 오르골은 자주 등장한다. 부드럽고 몽환적인 음색이 장면과 캐릭터에 깊이를 더한다.

이번 호에서는 어린 시절 추억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감성 있는 멜로디의 오르골에 관한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한다.

2. 분류 사례

가. 개요

- 황동제 조형물 및 와이어와 목재 프레임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손잡이를 회전시키면 오르골 소리[실린더는 키로 감는 스프링구동식(태엽식) 모터에 의해 회전]와 함께 로봇 모양의 공예품에 매달린 와이어로 각 관절이 움직이는 물품

나. 결정 세번 및 분류 이유

- 결정 세번 : 제9208.10-0000호

- 분류 이유

관세율표 제9208호에는 '뮤지컬박스·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뮤지컬소(musical saw)와 그 밖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데코이 콜(decoy call), 휘슬·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가 분류되며, 소호 제9208.10호에는 '뮤지컬박스'를 세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뮤지컬박스(musical box) : 자동적으로 회전하여 연주하는 소형의 기계식 무브먼트(movement)로서 상자나 여러 가지의 다른 물품 안에 결합되어 있다. 그 주요부는 핀을 갖춘 실린더(연주할 곡의 음률에 따라서)인데 ; 실린더가 회전하면 핀이 빗의 살과 같이 배열된 금속으로 만든 설(tongue)에 접촉함으로써 설이 진동하며 음조를 낸다. 주요부는 판 위에 부착되어 있으며 실린더는 키로 감는 스프링구동식(태엽식) 모터에 의하여 회전한다. 어떤 형의 것은 실린더가 상하로 변화를 주는 금속제 반(sheet-metal disc)으로 대치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은 상단부 목재상자 안에 자동으로 회전해 연주하는 소형의 기계식 무브먼트가 내장된 뮤지컬박스와 태엽을 감는 핸들이 함께 구성된 물품으로서 '장식'이 본질적인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물품은 뮤지컬박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208.10-0000호에 분류했다.

3. 품목분류 적용 길라잡이

부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류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호	(제9028호) 뮤지컬박스·페어그라운드 오르간 … <후략>
HSK	(소호 제9208.10호) 뮤지컬박스 / (소호 제9208.90호) 기타

4.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9208.10-0000호
품명	Musical box(auto orgel)
물품 설명	황동제 조형물 및 와이어와 목재 프레임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손잡이를 회전시키면 오르골 소리[실린더는 키로 감는 스프링구동식(태엽식) 모터에 의해 회전]와 함께 로봇 모양의 공예품에 매달린 와이어로 각 관절이 움직이는 물품



기타 광물성 제품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형석(Fluorite, CaF2)은 고대부터 알려진 광물로, 로마 시대에는 보랏빛과 청록빛이 섞인 장식품이나 술잔을 제작할 때 사용됐다. 하지만 이 광물이 과학사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였다. 당시 17세기 학자들은 형석이 자외선과 같은 특정한 빛을 받으면 스스로 빛을 방출한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오늘날 '형광(Fluorescence)'이라 불리는 현상의 최초 기록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용어가 바로 형석(Fluorite)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다.

19세기에는 형석이 또 다른 과학적 전환점을 제공했다. 형석을 가열해 얻을 수 있는 불산(HF)이 불소(F)의 발견에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이다. 프랑스 화학자 앙리 무아상(Henri Moissan)은 1886년 전기 분해법을 이용해 불소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으며 원소 이름 역시 형석의 이름에서 파생됐다.

이후 형석은 제철 산업에서 용융점 강하제로, 화학산업에서는 불산의 원료로, 그리고 특수 유리와 광학 장치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과학과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파쇄한 형석에 결합제 등을 혼합해 브리켓(Briquet) 형상으로 만든 것으로 '형석'이 분류되는 제2529.21-9000호로 신고했다.

제2529호는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형석(螢石 : fluorspar나 fluorite) : 다양한 색조의 줄무늬를 가진 견고한 덩어리로 생성되는 천연 플루오르화칼슘이며 또한 여러 색조의 응결된 결정이다. ; 이는 주로 플루오르화수소산의 제조와 야금용의 융제(融劑 : flux)로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광물을 파괴하여 그의 구성성분 입자로 만드는 열처리를 하여 얻은 형석(螢石 : fluorspar)을 포함하며 ; 이들 입자들은 크기가 서로 다르므로 단순히 체로 치는 방법으로 실리카(silica)부분을 제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제25류의 경우 가공방법(주 제1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遊選鑛)·자기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하소(煆燒)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또한, 총설에서는 "이 류의 생산품은 항분제(抗粉劑 : anti-dusting agent)를 첨가함으로써 일반적 용도 이외의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게 되지 않는 한 이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의 처리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광물성 생산품(예: 재결정 방법에 의하여 순수화시킨 것·이 류의 같은 호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광물을 혼합하여 얻어진 것·성형이나 조각하여 만든 물품)은 일반적으로 다른 류에 분류한다(예: 제28류나 제68류)**"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의 경우 형석을 분쇄해 결합제를 혼합하고 브리켓 형상으로 성형했는데, 이는 가루를 사용하는 것보다 브리켓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즉, 형석을 단순 분쇄만 한 경우에는 제25류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목적을 가지고 특정 형상으로 성형한 것은 제25류 주 제1호의 규정에 어긋나므로 제25류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관세율표 제6815호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분류하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5)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불에 굽지 않은 벽돌과 그 밖의 모양의 제품(특히 마그네사이트나 크로뮴마그네사이트 제품). 이러한 물품은 이들을 노(爐) 안에 넣고 첫 번째 열을 가하는 동안 구워진다"라고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형석을 특정 형상으로 성형한 그 밖의 광물성 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15.99-0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FLUORSPAR BRIQUETTES	2529.21-9000 (FCN1 0%)	Articles of other mineral substances	6815.99-0000 (FCN1 2.1%)

공짜 술의 정체는 메탄올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 관세사

최근 라오스의 유명 관광지에서 무료로 제공된 술을 마신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외 매체에 따르면 미국·호주·덴마크 등 출신의 관광객 6명이 라오스의 유명한 관광촌을 방문해 무료로 술을 마셨는데, 산업용 화학물질인 메탄올이 첨가된 술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메탄올 중독으로 잇달아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최근 이곳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메탄올은 화학식 CH_3OH로 methanol 또는 methyl alcohol 또는 목정(木精)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매우 위험한 수준의 독성 물질로 메탄올에 노출되면 운이 좋아야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 치사량을 넘어 곧바로 사망한다.

현재 산업현장에서 메탄올이 빈번하게 쓰이고 있지만 독성이 강한 만큼 취급 시에는 전면형 송기 마스크,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 장갑, 보호 장화를 착용하고, 강력한 환기 시스템 설치가 권고된다.

술의 형태로 음용되는 주류 중 유효성분은 에틸알코올(ethyl alcohol) 또는 에탄올로 표기되며, 앞의 메탄올과 유사한 화학식을 갖는 물질이다.

관세율표에서는 메탄올·에탄올과 같은 물질을 '비환식 알코올(acyclic alcohols, 관세율표 제2905호)'이라 하고, 이와 상대되는 알코올의 것을 환식알코올(cyclic alcohols, 관세율표 제2906호)이라 한다.

이와 같이 비환식·환식 알코올 여부를 불문하고 관세율표에서는 일반적으로 제2905호 또는 제2906호에 분류하고 있지만, 때로는 저순도의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의 경우 제3823호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 … <후략>'에 분류된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비환식, 술의 유효성분인 에틸알코올의 경우 관세율표 제2905호가 아닌, 제22류 중 주종에 따라 제2203호 '맥주', 제2204호 '포도주', 제2206호 '기타 발효주 … <후략>', 제2208호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 <후략>' 등에 분류된다.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46호_2025.9.8.

최신개정법령

대통령령

-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부령

-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고시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대통령령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31호, 2025.9.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이 판매용인 경우에는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그 처벌을 강화하고, 검역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지체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법률 제20810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신고를 지체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법 제12조 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법 제50조 제3항 제4호**	10	20	40

별표 2 제2호에 자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의2. 법 제12조 제9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의2**	5	10	20

별표 2 제2호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0조제3항 제4호의2”를 “법 제50조 제3항 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의3”을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의4”로 하며, 같은 호 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의4”를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의5”로 하고, 같은 호 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의5”를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의6”으로 하며, 같은 호 서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의6”을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의7”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령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1140호, 2025.9.5.)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厚板)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厚板)(「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또는 제7219.22.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熱間)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코일 형태의 제품
2.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흑판(black plate) 형태의 제품
3.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천밀리미터 미만인 제품
4.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904L 강종(鋼種)의 제품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스촹(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나. STX 재팬(STX Japan Corporation) 다. 베스트 윈(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라. 장쑤(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21.62
	2. 그 밖의 공급자	

고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5-44호, 2025.9.1.)

◇ 개정 사유 ◇

□ 소규모 보세판매장 면적 확대 절차 개선 내용의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반영
□ 보세판매장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한 보세판매장의 업무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 주요 개정내용 ◇

□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반영
가. 50㎡이내 매장면적 확대 시 특허심사위원회 의결없이 세관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면세점 행정부담 완화(제14조 제3항 제3호)

□ 보세판매장 운영 관련 절차 개선
가. 판매물품 가격표시 화폐단위 자율성 보장(제27조 제4항)
나. '선판매 후제작' 서비스를 허용하여 면세점의 판매 다각화 지원(제30조 제4항)
다. 입국장면세점에 대한 이동판매를 허용하여 입국장면세점 운영 효율성 제고(제33조 제3항)
* (기존) 출국장면세점에 대해서만 이동판매 허용
라. 인도장에서 여권 이외의 모바일 신원확인 방법 등 이용을 허용(제38조 제7항 제1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5-26호, 2025.9.2.)

◇ 개정 사유 ◇

□ 멕시코 식물검역기관의 요청에 따른 국외 생산지 조사 요건의 재검토 및 협의 결과, 양국 식물검역기관이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국외 생산지 조사 주기를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국외 생산지 조사 요건 변경(제6조 제1항)

1) 국외 생산지 조사 주기를 '5년'으로 변경

2) 수입검역에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국외 생산지 조사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요건 추가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79호, 2025.9.4.)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유리 소재인 모재를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클래딩·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서 정의하는 G.652단일모드 광섬유 A·B·C·D와 G.567굴곡강화 광섬유 A1·A2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SingleMode Optical Fiber). 다만, 광섬유 다발, 광섬유 케이블 및 G.652.D 중 Low Loss 제품은 제외한다.

ㅇ 관세품목분류(HSK) : 9001.10.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Hengtong Optic-Electric Co., Ltd	43.35
	2. Yangtze Optical Fibre and Cable Joint Stock Limited Company	43.35
	3. Hangzhou Jimxingtong Optical Fiber Technology Co., Ltd.	43.35
	4. 그 밖의 공급자	43.35

라. 부과기간 : 2025. 9. 19. ~ 2026. 1. 18.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 044-215-4462
- 팩스 : 044-215-8077
- 이메일 : chae0815@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977호, 2025.9.2.)

「항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새만금신항은 2010년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신항만으로 지정·고시된 후 2019년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잡화부두 2선석의 개발이 진행되어 2026년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이 출입하거나 수입·수출 화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으로서의 지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최근 「항만법」에 따라 관계부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통합한 새만금항을 항만으로 지정하고, 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 그리고 각 항만은 군산항(Gunsan Port),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새만금항의 항만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의 구분·세분·명칭·위치 및 구역 변경(안 제3조 별표 1·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orry99@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1)로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2호, 2024.1.3.)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9.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2호, '24. 1. 3.)

2. 개정 사유

□ 반도체 등 첨단·핵심산업의 클러스터 구축과 수출 확대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건설장 특허·관리 관할세관 확대

○ 보세건설장 완공 후 기존 보세공장과 단일보세공장으로 통합할 예정인 경우, 기존 보세공장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의 특허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4③)

4.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 담당자 : 박규열주무관
- 제출기한 : 2025. 9. 23.
- 제출방법 : (전화) 042-481-7906, (팩스) 042-481-7749, (전자우편) p131599@korea.kr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8호, 2025. 2. 1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9. 22.(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8호, '25. 2. 12.)

2. 개정 사유

□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인증서 재발급 시 기존 인증서 반납 규정 폐지

□ 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업체별 인증심사 기준* 및 원산지관리전담자 자격요건 개선**

* 심사대상품목 선정 기준 마련, ** 원산지관리에 관한 컨설팅 이수 요건 강화

□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활성화를 위해 자율점검표 서식 간소화

□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시 규정 정비

① [규칙 §7①13호('21.1.1)] (한-영 FTA)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시 서면확인서 제출시 서명 생략

② [규칙 §17⑧('24.3.22)] 인증유효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지 않도록 연장신청 기간 제한*

* [개정전] 인증만료 30일전까지 연장신청 → [개정후] 인증만료 1년전부터 30일전까지 신청

3. 주요 개정내용

□ 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시 기존 인증서 반납 의무 폐지(§12조의3)

○ 인증서 교부 시 인쇄 오류 등으로 인증서를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기존 인증서를 반납해야 하는 불편한 업무절차 개선*

* 인증수출자 진위여부는 증명서발급기관 전산시스템,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기존 인증서를 회수하지 않아도 인증서 위변조 우려가 크지 않음

□ 업체별 인증심사 기준 및 원산지관리전담자 자격요건 개선(별표 2·3)

○ [별표 2] (업체별 인증심사 기준) 심사대상 품목 선정기준 마련

개정전	• 업체가 선정한 5개 이내 심사품목 선정
개정후	• 최근 3년 주요 수출품목 중 상위 3개 이상 5개 이내 심사품목* 선정 * 원산지결정이 부가가치기준인 품목 1개 이상 필수 포함

○ [별표 3] (원산지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등 요건) FTA컨설팅 이수 요건 강화

- FTA관련 교육이수 등 원산지관리전담자 자격요건 인정점수 중 높은 점수가 인정되는 FTA컨설팅의 경우 관련 증빙을 통해 적정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인정점수를 타 교육이수 시 인정점수와 균형 조정

개정전	• FTA컨설팅 건당 5점(최대 15점)
개정후	• FTA컨설팅 건당 4점(최대 12점) • 컨설팅 수행완료 보고서 등 관련증빙 자료를 통해 요건확인

□ 자율점검 결과통보서 및 점검표 서식 개선(별지 제5호·제6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결과통보서) 원산지관리전담자 자격요건 증빙 자료 추가

○ [별지 제6호 서식] (점검표) 서식 유형별(업체·품목별) 이원화 및 간소화

개정전	• **자율점검표 공통서식, 점검항목 64개**
개정후	• **자율점검표 서식 유형별 이원화, 점검항목 간소화(업체별 45개, 품목별 44개), 작성가이드 제공** • 수출자·생산자 다른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 추가 제출 • 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생산자의 제조공정도와 원재료내역서 대신 해당 생산자가 수행한 자율점검 결과에 대한 세관의 '자율점검 결과 검토의견서'로 대체 가능

□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시 규정 정비

○ 시행규칙 §7①13호('21.1.1.) 개정에 따른 인증신청 제출서류 정비(§7①5호)

○ 시행규칙 §17⑧('24.3.22.) 개정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 정비(§13)

4.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025. 9. 22.까지(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담당자 : 백종철사무관(042-481-3212), 권영미주무관(042-481-3234)
- 제출방법 : 이메일(kym626@korea.kr)

2025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실무에 다각도로 활용하는 관세·무역 백과사전

- ☑ 최신 업데이트: 2025년 개정 HSK에 따른 FTA·WTO 세율 및 법령 개정분 수록 (한·필리핀 FTA 신규 추가)
- ☑ 정확성 강화: FTA·WTO 일부양허품목 세율체계 재정비로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 편의성 향상: 기본편 보기 요령 이미지 추가, 학명 표기 개선으로 이해도·가독성 제고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2025 개정판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1 최신 기준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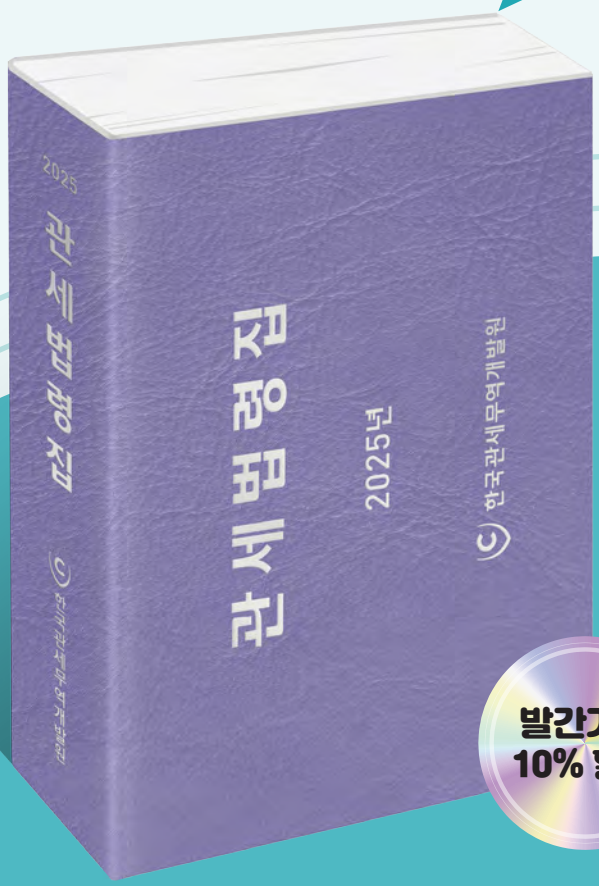
- 관세/무역 관련 법령
- 2025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반영
- 고시 : 97개 → 82개
- 훈령 : 116개 → 92개
- 지시·지침 : 1,333개 → 501개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위임조문 3단비교 편집)



발간기념
10% 할인

65,000원 → **58,500원**

2025년 6월 넷째주 발간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5년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 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① 논문 원고
② 논문투고 신청서
③ 연구 윤리 확인서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 의 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